

## 지원금 산정기준 및 증빙사항

구분		산정기준 및 집행기준	증빙사항
비목	세목		
인건비	인건비	<p><b>&lt;산정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제작 인력에 지급되는 직접 인건비</li> <li>○ 신청자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법인사업자 대표 인건비는 50%까지 인정</li> </ul> </li> <li>○ 원천징수세액, 4대 보험료 등은 제작비로 인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, 고용주 부담금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○ 협약기간 내 한하여 소속 제작사 (개인)의 급여기준 따라 실지급액을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되 복리후생 성 경비(선물, 경조사 등)는 불인정</li> </ul> <p><b>&lt;집행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총사업비의 70%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(스태프 우선)</li> <li>○ 2026년 최저시급 준수 의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시간 기준 시급 10,320원 / 월급(209시간) 2,156,880원</li> </ul> </li> <li>○ 원천징수 신고납부 대상인 인건비성 수당인 경우 소득세 등 원천징수(기타 8.8%, 사업 3.3%)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</li> <li>○ 금액 불문 계좌이체 원칙</li> </ul>	<p><b>&lt;정산 시 제출서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)</li> <li>○ 통장 사본</li> <li>○ 이체확인증(입금확인증)</li> <li>○ 참여인력 현황표(양식-첨부2)</li> <li>○ 계약서 및 이력서(5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○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125천원 초과 시-국세/지방세)</li> </ul> <p><b>&lt;불인정 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타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중복(또는 초과) 지급받는 경우</li> <li>○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인건비용</li> </ul>
일반 운영비	임차비	<p><b>&lt;산정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 제작에 소요되는 외부장비, 외부시설 이용료 등 순수 임차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비: 촬영, 조명, 음향, 녹음, 운반비, 차량임차료 등</li> <li>- 시설: 로케이션 섭외비, 녹음·편집시설 임차비 등</li> </ul> </li> </ul> <p><b>&lt;집행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액 불문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원칙</li> <li>○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공간 임차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(기타 8.8% 적용)하고 차액을 수령인의 계좌에 송금(등기부등본 필수)</li> </ul>	<p><b>&lt;정산 시 제출서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</li> <li>○ 사업자등록증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통장 사본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견적서(3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○ 거래명세서(3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○ 계약서(10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※ 100만원 초과 시 견적서, 거래명세서, 계약서 필수</li> <li>○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(125천원 초과 및 개인지급 시)</li> </ul> <p><b>&lt;불인정 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자가(내부) 시설 및 장비 이용, 사무실 운영(전기요금, 인터넷 사용료 등)</li> <li>○ 제작 종료 후에도 자본적 성격으로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한 경비(장비 구입 및 수리 등)</li> <li>○ 당해 제작과 관련되지 않은 임차비</li> <li>○ 전자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처리한 사업비</li> <li>○ 결과보고서가 약식으로 작성되었거나 임차 대상물이 비용에 비해 과다 책정된 경우</li> </ul>
	진행비	<p><b>&lt;산정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당해 제작에 소요되는 진행비 일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모품 구입비: 재료비, 행정비품(건전지, 테이프 등)</li> <li>- 기타 진행비: 식대 및 부식비, 숙박비, 교통비(항공료, 유류대, 주차료 등) 진행비</li> </ul> </li> <li>※ 소모품: 원재료나 일회용품과 같이 재사용이 불가하거나 저가품 또는 단기 사용 일회용품 등 비품으로 관리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물품</li> <li>○ 수수료: 회계 감사비용(지원금 3천만원 이상)</li> </ul> <p><b>&lt;집행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액 불문 체크카드 또는 계좌이체 원칙</li> <li>○ 본 사업 관련 소모품 구입 시 소명 가능 할 경우 사전협의 후 구매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20만원 미만의 외장하드,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식대(부식비 포함)는 총사업비의 30% 초과할 수 없음</li> </ul>	<p><b>&lt;정산 시 제출서류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카드영수증 또는 이체확인증</li> <li>○ 사업자등록증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통장 사본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세금계산서(계좌이체 시)</li> <li>○ 견적서(3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○ 거래명세서(3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○ 계약서(100만원 초과 시)</li> <li>※ 100만원 초과 시 견적서, 거래명세서, 계약서 필수</li> <li>○ 탑승권(항공권 이용 시)</li> <li>○ e-티켓(예약 및 결제 정보 포함)</li> </ul> <p><b>&lt;불인정 기준&gt;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항공, 선박, KTX 등 실물 티켓이 발행되는 교통편은 인정되며, 택시비, 일반버스는 불인정</li> <li>○ 숙박, 교통비 등 결제 시 발생한 대행수수료(대행사이트)</li> <li>○ 숙박, 교통비 등 결제 취소, 변경 시 발생한 수수료</li> <li>○ 결과보고 시 참여인력표에 등록되지 않은 인원의 출장경비</li> </ul>

## 집행내역별 불인정 기준

구 분	공통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불인정기준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협약체결일 이전 또는 협약된 지원종료일 이후 집행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부득이한 경우,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 금액은 인정 가능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</li> <li>○ 사업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</li> <li>○ 인건비,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대금집행이 아닌 경우 사업비 카드(체크) 사용을 원칙으로 함</li> <li>○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약정된 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</li> <li>○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·여비 및 4대보험 기업부담금</li> <li>○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</li> <li>○ 환급 가능한 관세,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행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,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</li> <li>환급 대상임에도 이를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한 경우, 해당 금액은 정산 시 감액 조치한다.</li> <li>단,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.</li> <li>※ 자부담 비율은 최종 인정 집행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</li> <li>○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,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</li> <li>○ 신청자(사)와 인척관계(4촌 이내)인 사업장과 거래한 경우</li> <li>○ 관리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</li> <li>○ 부동산임차료, 공과금 납부 등 지원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</li> <li>○ 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지출한 경우</li> <li>○ 간이영수증(수기로 작성한 종이 영수증), 해외결제(해외직구) 건</li> <li>○ 그밖에 진흥원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주의사항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유흥 및 생활 편의시설(사우나 등) 이용, 범칙금, 주류/담배, 기타 회식비 불인정</li> <li>○ 소품의 경우 대여를 원칙으로 하나 대여가 불가능한 품목 구매 시 실제 구매한 소품 등을 활용하여 현장 스틸컷 또는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첨부</li> <li>○ 인터넷 결제 시(쿠팡, 네이버 등 쇼핑몰 구입) 카드결제 필수(구매내역서 첨부)</li> </ul> <p>※ 사업비 규모별 회계검사 수수료(예시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25%;">사업비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수수료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공급가액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부가가치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천만 원 미만</td> <td>282,000원</td> <td>256,364원</td> <td>25,636원</td> </tr> <tr> <td>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</td> <td>336,000원</td> <td>305,455원</td> <td>30,545원</td> </tr> <tr> <td>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</td> <td>365,000원</td> <td>331,818원</td> <td>33,182원</td> </tr> <tr> <td>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</td> <td>505,000원</td> <td>459,091원</td> <td>45,909원</td> </tr> <tr> <td>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</td> <td>547,000원</td> <td>497,273원</td> <td>49,727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</td> <td>590,000원</td> <td>536,364원</td> <td>53,636원</td> </tr> <tr> <td>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</td> <td>632,000원</td> <td>574,545원</td> <td>57,455원</td> </tr> <tr> <td>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</td> <td>674,000원</td> <td>612,727원</td> <td>61,273원</td> </tr> <tr> <td>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</td> <td>848,000원</td> <td>770,909원</td> <td>77,091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사업비	수수료	공급가액	부가가치세	3천만 원 미만	282,000원	256,364원	25,636원	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	336,000원	305,455원	30,545원	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	365,000원	331,818원	33,182원	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	505,000원	459,091원	45,909원	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	547,000원	497,273원	49,727원	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	590,000원	536,364원	53,636원	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	632,000원	574,545원	57,455원	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	674,000원	612,727원	61,273원	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	848,000원	770,909원	77,091원
사업비	수수료	공급가액	부가가치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만 원 미만	282,000원	256,364원	25,636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천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	336,000원	305,455원	30,545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	365,000원	331,818원	33,182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미만	505,000원	459,091원	45,909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	547,000원	497,273원	49,727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	590,000원	536,364원	53,636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천만 원 이상 9천만 원 미만	632,000원	574,545원	57,455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	674,000원	612,727원	61,273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	848,000원	770,909원	77,091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